2021년도 제3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11. 1.(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9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01건(안건번호 제2021-150616호~15147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50616호는 해당 사안 및 유사 사안에 대한 기준 정립을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1-150617호~150624호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바 시정권고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9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9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저작물명, 게시물 본문, 원저작물 분량, 5쪽 민원인 신고 내용, 게시자명, 6쪽 온라인서비스명, 광고 수익 배분 조건, 9쪽 저작물명, 10쪽 저작물명, 개봉일자, 온라인서비스명 및 커뮤니티명 등 민원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80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1-150616호~15174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0616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의 '★★★★★★★★★★★★'에 2021. 10. 23. "○○○○○○○○○○○○○○○"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임.

  '☆☆☆☆☆☆'는 주제별 커뮤니티 게시판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임. 이용자들은 관심사에 따라 특정 게시판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게시판 이용자 유입을 목적으로 다른 게시판에 홍보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게시자는 '●●●●●●'에서 활동하는 자로 추정되며, '★★★★★★★★★★★★★'에 '●●●●●●' 홍보 목적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음. 해당 게시물은 심의대상 일러스트와 게시판 주소 url 및 환영글로 구성되어 있음.

  민원인은 자신이 심의대상 일러스트의 저작자이며, 게시자가 자신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민원인 신고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은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적이 없으며,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형태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2021. 1. 30. 작성된 원게시물 본문과 댓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작성자인 "◎◎◎◎◎"가 심의대상 일러스트의 저작자이며, 원게시물을 통하여 해당 일러스트를 최초로 공표한 것으로 추측됨.

민원인은 자신이 원게시물의 작성자인 "◎◎◎◎◎"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 계정 정보 및 가입에 사용된 이메일 계정 정보, '☆☆☆☆☆☆' 비공개 게시글 목록을 제출하였음. 이에 따르면 민원인이 원게시글의 작성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일러스트와 관련한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전송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 저작자인 민원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등 침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보호원에 침해 신고를 하게 된 점, 저작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5061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심의대상 일러스트를 변형 없이 그대로

복제·전송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크기만 약간 조정하였음.

- A 위원: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는 것이 아닌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귀속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특정 목적에 한하여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닌 타 이용자가 민원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

- B 위원: 민원인 신고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닌지?

- C 위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D 위원: 민원인이 저작자라는 점이 시정권고 의결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지 의문임.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구제를 받지 못하

였음. 이에 다른 권리 침해 구제 방안으로서 보호원을 찾게 된 것으로, 이 경우 권리 침해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 E 위원: 동의함.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권리소명을 하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명백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자가 침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이런 경우 시정권고 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C 위원: 심의대상 일러스트는 명백하게 저작물임이 인정되고, 민원인 또한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데 합법 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함.

- D 위원: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원본 저작물이 맞는지, 민원인이 저작자인지에 관해서는 실체적 판단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 또한 당사자 간 분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안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임.

- B 위원: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E 위원: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사인 간 분쟁의 경우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실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빠른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임. 다만 당초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다르게 타인에 의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일부 경고 또는 삭제의 시정권고를 한 사례도 있음.

  이때 실체적 판단이 어려운 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사안의 경우 민원인이 권리 관계에 대하여 소명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기존의 사안들과는 다르게 볼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자가 법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구제 요청을 하는 등 보호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이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대체적 수단이 없음.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분쟁 조정 절차 등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익명의 게시자가 작성하였고, 커뮤니티 가입자도 아닌 것으로 보임. 조정을 한다고 하여도 당사자 특정조차 어려운 사안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의견이 갈리고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가 시정권고 판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5조

의 요건 해당성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먼저 심의대상 일러스트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민원인이 적극 소명한 부분으로 보건대, 복제·전송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임. 기타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에 대하여, 복제·전송자를 특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분쟁 조정 절차 등 기타 절차를 실효성 있는 대체적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임. 그렇게 되면 민원인으로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음. 더불어 민원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법 제103조 및 이용약관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노력을 하였음. 다만 해당 일러스트 시장의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본 사안과 같은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A 위원: 동의함. 저작권 침해는 인정됨. 다만 사적 분쟁의 성격을 지닌 점,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 여타 사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사안임. 관련하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영리성이 없는 사안임. 당사자 간의 사적 분쟁으로 보임.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필요성이 있음.

- D 위원: 저작자로 추정되는 자가 권리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사이트의 특성상 침해자 특정이 어려워 본 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긴 하나,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분쟁이라는 점, 영리적 목적 및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위원회에서 유사 사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E 위원: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전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0616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0617호~15062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및 ◆◆◆◆◆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및 출판 만화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0625호~15174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Savag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0991호는 가수 aespa의 'savage', 아이유의 'strawberry moon' 등 2021. 10. 초 발매된 최신 앨범들을 압축 파일로 묶어 5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게임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1031호는 2021. 9. 9. 출시된 최신 게임의 한글판을 4,06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합법 시장에서의 가격은 64,800원임.

(영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1170호는 2021. 10. 13. 개봉하여 현재 상영 중인 영화임. 해당 불법복제물은 극장에서 불법 녹화한 일명 '캠 버전'으로, 자막의 내용으로 보아 해외에서 녹화된 영상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50617호~1517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0617호~15174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0616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021-150617호~15174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3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